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 공모 개시

- 4월 8일(월)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로 공모 신청·접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인증) 공모절차를 개시하였다. 적합성인증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기존의 표준·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해당 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을 신속 마련·인증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돕는 인증제도이다.

올해는 인증절차 개선, 시험인증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 추진으로 신청 예상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우선 순위를 평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에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인증 공모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표원은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사전확인 후 적합성인증 신청 대상 여부, 산업융합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기준 제정 등 인증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표원은 산업융합 기술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증 수요를 고려하여, 보다 많은 산업융합 신제품 제조 기업의 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적합성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누리집(<https://www.knicc.re.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	책임자	과 장	이위로 (043-870-5500)
		담당자	주무관	황상훈 (043-870-5502)

국가기술진흥원 공고 제2024 - 99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제18661호)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목적

-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일수록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취득 불가로 인한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사업화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예정

2. 주요 모집내용

-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3개 제품* 선정
 -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선정 단계 및 선정 기준
 - (사전확인) 신청제품의 개발단계(시제품의 보유 여부), 허가등의 근거법령* 유무, 해당 법령에 따른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애로 유무 등 기본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
 - * 시장출시를 위해 필요한 허가등의 근거법령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으로 한정
 - * 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

- (자격심사) 법령에 정한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 부합여부, 안전성, 인증 기준 설정 가능성**을 심사하며, 신청기업은 제품소개, 신청사유, 우수성 등을 발표

*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항

**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

- (최종심사) 자격심사를 통과한 제품 중 '산업융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 선정

*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

< 선정단계별 선정기준 >

심사단계	선정 기준	검토/심사
사전확인	- 시제품 보유 여부 - 시장출시를 위해 필요한 허가등의 근거 법령 유무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으로 한정 - 기존 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 유무	국가산업 융합센터
자격심사	- 산업융합 촉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 부합여부 -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이슈 유무 -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설정 가능여부	신청제품별 사전검토 위원회
최종심사	- 성능 품질 우수성 - 기술적 파급효과(혁신성) - 경제적 파급효과 - 사회적 파급효과	선정위원회

□ 선정 혜택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산업융합 촉진법) 취득을 위해 필요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소관부처/전액 정부예산 활용)

* 선정 제품별로 소관부처(산업부)에서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 제정

* 선정된 기업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인증 심사 비용은 본 공모를 통해 지원되지 않음(기업 부담)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 시 주요 혜택 >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의제(KS, KC등 기존 인증의 인증마크 부착 후 출시 가능)
○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가점 부여(신인도 심사)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라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평가 시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신기술 제품 점수 부여(대면평가)

3. 추진 절차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선정 절차	공고	모집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24.4.8.(월)~
	신청/접수	신청서 제출(접수처: 국가산업융합센터)	~'24.4.26.(금)
	사전확인	기본 요구사항 확인(국가산업융합센터)	~'24.5.2.(목)
	심사서류 제출	심사서류 제출(심사서류 제출 대상 기업)	~'24.5.17.(금)
	자격심사 (발표 평가)	법령에 따른 신청사유 해당여부 판단 (신청제품별 사전검토위원회)	~'24.6.7.(금)
	최종심사	산업융합성 우위 심사 (선정위원회)	~'24.6.13.(목)
	선정 결과안내	결과공고 및 통보	'24.6.14.(금)
인증 절차	적합성 인증 신청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선정 기업)	~'24.6.28.(금)
	인증 기준 통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소관부처)	~'24.9.27.(금)
	인증 심사	인증 심사(인증심사기관)	~'24.12.20.(금)
	인증서 발급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 발급(합격 시) (소관부처)	~'24.12.27.(금)

※ 본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제품들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은 선정 후 인증절차 과정에서 진행

4. 신청 요령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8.(월) ~ 2024. 4. 26.(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양식 참조)
- 수신 이메일 : ldh4820906@kitech.re.kr * 첫 번째 영문은 엘(l) 임.

심사서류 제출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4. 5. 6.(월) ~ 5. 17.(금) 18:00
- * '사전확인' 단계 후 대상 기업에 한해 심사서류 제출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 시
 - 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신청서
 - ②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

 - 심사서류 제출 시(심사서류 제출 대상 기업에 한함)
 - ① 사업자등록증명
 - ②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자료
 - ③ 자격심사 발표자료(자유양식으로, 제품설명, 기존 인증 취득불가사유, 우수성 등 필수 작성)
 - ④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時, (예) 시험성적서 등)
 - ⑤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정서·지정서·인증서 사본 1부, 해당시)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중앙정부·지자체 인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 ⑥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 실적, 신청제품 구매의향서 등)
-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5. 유의 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기업이 아래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① 휴·폐업 기업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